

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① 법 인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 표 자		④ 전화번호	
⑤ 소 재 지		⑥ 청산인성명	
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			
⑧ 업 태		⑨ 종 목	
		⑩ 계산구분	[] 확정 [] 중간
⑪ 해산등기일		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	
⑬ 직전 사업연도		⑭ 의제 사업연도	

구 분	법 인 세		
	청 산 소 득	토지등 양도소득	계
⑮ 과 세 표 준			
⑯ 세 율			
⑰ 산 출 세 액			
⑱ 가산세액			
⑲ 공 제 세 액			
⑳ 차감납부세액			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84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,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[해산의 경우] 1. 잔여재산분배(확정)시 재무상태표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⑩계산구분란: 「법인세법」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2. ⑪해산등기일란: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.
3.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: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.
4. ⑭의제사업연도란: 「법인세법」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.
5. ⑮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: "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(별지 제59호서식 부표)"의 ⑥, ⑮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,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⑯가산세액란: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)"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.
7. ⑰공제세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8. 2010.7.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.

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1.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		2. 해산의 경우			
구	분	구	분		
①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		⑦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			
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	② 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	⑧ 가산			
	③ 잉여금				
	④ 자기자본 총 액(②+③)				
⑤ 기 분 배 금 액					
⑥ 청 산 소 득 금 액(①-④+⑤)			계		
		⑨ 공 제			
			계		
				⑩ 기 분 배 금 액	
				⑪ 차 감 재 산 가 액 (⑦ + ⑧ - ⑨ + ⑩)	
		자기자본의 총 액	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		
			⑬ 잉 여 금		
			⑭ 환 급 법 인 세		
⑮ 계(⑫ + ⑬ + ⑭)					
⑯ 청 산 소 득 금 액(⑪-⑮)					

작성 방법

1. ①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.
2. ⑤ 기본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.
3. ⑦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)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⑧ 가산란 및 ⑨ 공제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⑩ 기본배금액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⑬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(누계액)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.
7. ⑭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.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가 산 세 액 계 산 서 (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가산세액의 계산

① 구 분		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
		②계산기준	③기준 금액	④가산세율	⑤ 코드	⑥가산 세액
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29	
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31	
		무신고납부세액		60(30)/100	80	15.1.1.개시
과소 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3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22	
		과소신고납부세액		60(30)/100	81	15.1.1.개시
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4	
기타						
합 계					21	

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
②계산기준	③기준 금액	④가산세율	⑤ 코드	⑥가산 세액
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42	
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44	
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46	
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47	
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51	
합 계			53	
법정납부기한 (. .)				
납부일 (. .)				

2.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

⑦ 구분	과소신고 과세표준				⑫ 과소신고 납부세액	⑬ 과세표준 금 액	과소신고납부세액			
	⑧ 계	⑨ 일반	⑩ 부정	⑪ 부정 (국제 거래)			⑭ 계	⑮ 일반 [⑫ ×(⑨/⑬)]	⑯ 부정 [⑫ ×(⑩/⑬)]	⑰ 부정 (국제 거래) [⑫× (⑪/⑬)]
청산소득										
토지 등 양도소득										

작성 방법

1. 무신고가산세

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.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%,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는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2. 과소신고가산세

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(⑨)와 부정과소(⑩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⑪)로 구분하여 ⑬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⑫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⑭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(⑮), 부정과소(⑯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⑰)로 구분하여 적은 후,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의 과소신고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%(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,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%,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,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3. 납부지연가산세

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
4. ① 구분란의 기타란

「법인세법」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
5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